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91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민병덕・박용진・천준호

강병원 · 이탄희 · 인재근

최혜영 · 송갑석 · 윤준병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	4
하수도· <u>공원</u> ·공용주차장·공동	<u>구</u> 거(溝渠)·공원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